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박민규 · 윤준병 · 김현정
김우영 · 최혁진 · 김한규
임미애 · 박선원 · 윤후덕
김태선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.

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3조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단서 중 “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”을 “있거나,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,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